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작 결함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고차 표시·광고 금지 유형에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매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구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은폐·축소를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 및 중재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9조의6 개정, 안 9조의7 신설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6(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작결함
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결함분과위원회 :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 각 목 및 제3호(제
작결함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중재분과위원회 : 법 제47조의7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3호(제작결
함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제작결함분과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제9조의7부터 제9조의11까지를 각각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2까지로 하고,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작결함분과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작결함분과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당사자 등의 재심의 요청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는 제작결합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검토, 교환·환불중재 신청 적법 여부 검토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8(중전의 제9조의7)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작결합 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9조의11(중전의 제9조의10)의 제목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을 “(제작결합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7조의제11제1항제1호”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로,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을 “제9조의7제6항에 따라”로, “위원회”를 “제작결합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작결합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여 해당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11(중전의 제9조의10)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제작결합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7까지를 각각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8까지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표시·광고)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법정 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 등 자동차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제13조의9부터 제13조의11까지,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을 각각 제13조의10부터 제13조의12까지,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로 하고,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6(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6(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작결함분과위원회 :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 각 목 및 제3호(제작결함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2. 중재분과위원회 : 법 제47조의7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3호(제작결함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제작결함분과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제9조의7(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제작결합분과위원회는 제5항
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
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
다.

⑦ 제작결합분과위원회는 제6항
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
부터 18일 이내에 당사자 등의
재심의 요청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는 제작결합 재심

	<u>의 신청에 대한 검토, 교환·환불 중재 신청 적법 여부 검토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⑨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 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생략)	제9조의8(제작결함분과위원회의 -----)(현행과 같음)
제9조의8(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생략)	제9조의9(----- ----)(현행과 같음)
제9조의9(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생략)	제9조의10(-----) (현행과 같음)
제9조의10(위원회 심의결과에 대 한 재심의절차 등) ① 법 제47 조의제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 심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 47조의7 제2항제2호에 따른 심 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	제9조의11(제작결함분과위원회 - -----) ① 법 제47 조의제11제1항제1호에 ----- ----- 제9조의 7제6항에 따라 ----- -----

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
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
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
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11(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생 략)

<신 설>

----- 제작결함분과위원회에

② 제작결함분과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실시 여부를 의결
하여 해당 의결이 있는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
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작결함분과위원회는 ----

제9조의1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자
동차 표시·광고) 법 제57조제3
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
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

	<u>로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의 대 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 한 표시·광고</u> <u>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u> <u>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 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거 래조건, 법정 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 등 자동차 거래여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 자를 속이는 표시·광고</u>
<u>제13조의2 ~ 제13조의7 (생략)</u>	<u>제13조의3 ~ 제13조의8 (현행 제 13조의2부터 제13조의7까지와 같음)</u>
<u>제13조의9 ~ 제13조의11 (생략)</u>	<u>제13조의10 ~ 제13조의12 (현행 제13조의9부터 제13조의11까지 와 같음)</u>
<u><신설></u>	<u>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광 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u>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 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u>

<u>제14조의6</u> · <u>제14조의7</u> (생략)	<u>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1.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u>민법</u>」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u> <u>제14조의7</u> · <u>제14조의8</u> (현행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6